



2021. 3. 12.

이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21.3.12.에 실시한 [회계의 정석] 회계 이해 교육 시 안내드린 자료 중
보육사업안내 내용을 제외한 내용입니다.

* 보육사업안내 - 회계파트 : 2021년 보육사업안내 본문, 부록 참고 *

* 추후 변경되는 사항은 관련법 및 보육사업안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주요 변경사항 - 인건비

1. 정부지원시설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
2. 정부미지원시설 :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최저임금법 : 1월 1일부터 적용**)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시급	8,590원	8,720원	
일급	68,720원	69,760원	시급×8시간
월급	1,795,310원	1,822,480원	시급×209시간

3.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4시간 기준) : 1,011,000원

보조교사 4시간 초과하여 계약 시 급여 * 2021년 기준

구분	연장시간에 대한 급여	월급
5시간	$((1\text{시간} * 5\text{일}) + 1\text{시간}) / 7 * 365 / 12 * 8,720\text{원} = 227,342\text{원}$	227,342원 + 1,011,000원 = 1,238,342원 -> 1,238,000원
6시간	$((2\text{시간} * 5\text{일}) + 2\text{시간}) / 7 * 365 / 12 * 8,720\text{원} = 454,685\text{원}$	454,685원 + 1,011,000원 = 1,465,685원 -> 1,465,000원
7시간	$((3\text{시간} * 5\text{일}) + 3\text{시간}) / 7 * 365 / 12 * 8,720\text{원} = 682,028\text{원}$	682,028원 + 1,011,000원 = 1,693,028원 -> 1,693,000원
8시간	$((4\text{시간} * 5\text{일}) + 4\text{시간}) / 7 * 365 / 12 * 8,720\text{원} = 909,371\text{원}$	909,371원 + 1,011,000원 = 1,920,371원 -> 1,920,000원

보조교사 급여 지급 관련 정정 알림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199(2019.3.19.)

- 4시간 계약 후, 연장근무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 4시간 초과하여 연장계약 : 연장계약 시간에 대해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 지급

2021년 주요 변경사항 - 사회보험

구분	근로자	어린이집
건강보험	급여(기본급+제수당)× 3.43%	급여(기본급+제수당)× 3.4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1.52%	건강보험료× 11.52%
국민연금	급여(기본급+제수당)×4.5%	급여(기본급+제수당)×4.5%
고용보험	급여(기본급+제수당)×0.8%	급여(기본급+제수당)×1.05%
산재보험	-	급여(기본급+제수당)× 0.76%
계정과목	원장급여, 보육교직원 급여	법정부담금

※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6.67%(각 3.335%)→**6.86%(각 3.43%)**)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10.25%→**11.52%**)

※ 산재보험요율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0.6% + **출퇴근산재 0.1%** + 임채 0.0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3% :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

* 산재보험료 청구 등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에서 확인

2021년 주요 변경사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육아휴직 부여 인센티브* 강화(1호→2, 3호)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인센티브 신설(1~3호) 등 중소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 지원
 - * 사업주가 처음(1호)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월 30만원)에 추가 인센티브(월 10만원) 지원
 - 두 번째(2호), 세 번째(3호) 부여한 경우까지 확대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2021년 주요 변경사항

항목	원칙	비고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한됨												
지원기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기간 동안 지급(최대 2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개월수는 역(曆)에 의해 산정, 남은 일수는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												
지원수준	육아휴직 : 근로자 1인당 아래 구분에 따라 지급													
	<table><tr><th>구분</th><th>1개월 지급액</th><th>연간총액</th></tr><tr><td>우선지원 대상기업</td><td>30만원</td><td>360만원</td></tr><tr><td>인센티브 적용</td><td>40만원</td><td>480만원</td></tr></table>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40만원	480만원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40만원	480만원												
* 해당 사업장의 첫 번째~세 번째 육아휴직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지원수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근로자 1인당 아래 구분에 따라 지급													
	<table><tr><th>구분</th><th>1개월 지급액</th><th>연간총액</th></tr><tr><td>우선지원 대상기업</td><td>30만원</td><td>360만원</td></tr><tr><td>인센티브 적용</td><td>40만원</td><td>480만원</td></tr><tr><td>대규모기업</td><td>10만원</td><td>120만원</td></tr></table>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40만원	480만원	대규모기업	10만원	120만원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40만원	480만원												
대규모기업	10만원	120만원												
* 해당 사업장의 첫 번째 ~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17.1.1. 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지원 제외,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결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 지원												

사 례

■ A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다음과 같이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근로자	적용여부	기간	근로자	적용여부
'18.1~'18.12	a	적용(1호)	'17.8~'18.7	甲	미적용
'19.4~'20.3	b	미적용	'18.8~'19.7	乙	미적용
'21.1~'21.12	c	적용(3호)	'20.6~'21.5	丙	미적용
'21.3~'22.2	d	미적용	'21.5~'22.4	丁	미적용

☞ a는 현행 1호 인센티브 적용, b는 개정규정 시행 전 두 번째 사용자이므로 미적용

c는 개정규정에 따라 3호 인센티브 적용, d는 네 번째 사용자이므로 미적용

☞ 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하였으므로 인센티브 미적용

丁은 A사업장 네 번째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이므로 인센티브 미적용

■ B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다음과 같이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근로자	적용여부	기간	근로자	적용여부
'19.6~'20.5	a	적용(1호)	'18.8~'19.7	甲	미적용
'21.1~'21.12	b	적용(2호)	'21.2~'22.1	乙	적용(2호)
'22.5~'23.4	c	적용(3호)	'21.5~'22.4	丙	적용(3호)

☞ A사업장에서 b가 육아휴직으로 2호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중이더라도, 乙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2호 인센티브를 별도로 적용함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각각에 대하여 인센티브 적용)

출산전후휴가 급여(2020.1.1. 시행) - 2021년 변동없음

구분	단태아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출산 후 45일)	120일(출산 후 60일)
기업의 임금 지급 의무	60일	75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고용지원센터) * 30일 기준 200만원 한도(20.1.1.)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중소기업	90일 모두 지원
		45일 지원
		120일 모두 지원

ex1. 통상임금 220만원

구분	30일	60일	90일
고용보험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사업장	20만원	20만원	-

ex2. 통상임금 1,822,480원

구분	30일	60일	90일
고용보험	1,822,480원	1,822,480원	1,822,480원
사업장	-	-	-

2021년 주요 변경사항

<유급휴일의 확대>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근로자 30인 이상 : 노사협의회 설치 및 분기별 1회 회의 개최, 고충처리위원 선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021년 주요 변경사항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행 <2020.12.8.>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 가족돌봄등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1.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전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전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일]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전기사용의 증가로 공공요금의 예산액 12,600,000원보다 200,000원이 부족하게 됨
- 출장 감소로 인해 여비 예산액 3,000,000원을 다 집행하지 못함
- 2021.2.25. 여비 예산에서 200,000원을 공공요금 예산으로 과목전용 함

과목전용조서

(단위 : 원)

관	항	목	전 용 년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현액 (1)+(2)	전 용 사 유	내 역	비 고
운영비	관리 운영비	여비	2021.2.25.	3,000,000	△200,000	2,800,000	출장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으로 전용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21.2.25.	12,600,000	200,000	12,800,000	전기사용량 증가	여비 집행잔액에서 전용	

과목전용 유의사항

- 동일하지 않은 항에 있는 목간 전용 불가
ex. 인건비 항에 있는 급여와 관리운영비 항에 있는 여비는 전용 불가
- 과목전용 후 결산서 작성 시 '예산현액'에 과목전용조서의 '현액'을 기재
- 총계정원장의 해당 계정과목에 과목전용 기재

세출결산서

(단위 : 원)

관	항	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비 고
운영비	관리 운영비	여비	3,000,000	2,800,000	2,700,000	100,0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600,000	12,800,000	12,800,000	0	

* 과오납으로 인하여 반환할 경우 : 수입한 세입에서 반환하고, 반납결의서 작성

날짜	말기신금액	찾으신금액
2021.4.1.	80,000	김지율
...		
...		
2021.4.11.	김지율반환	20,000

- 2021.4.1. 특별활동비 80,000원 수입결의서
4월 특별활동비(김지율), 2만원 초과 입금
* 4/11 2만원 반환함

- 2021.4.11. 특별활동비 $\Delta 20,000$ 원 반납결의서

* 과다지급으로 여입금이 발생한 경우 : 지출한 당해과목에 여입하고 반납결의서 작성

날짜	말기신금액	찾으신금액
2021.4.1.	특별활동업체	500,000
...		
...		
2021.4.11.	200,000	특별활동업체

2021.4.1. 특별활동비 지출 500,000원 지출결의서

2021.4.11. 특별활동비 지출 $\Delta 200,000$ 원 반납결의서

(응용) 3월 장부 확인 중, 3/29 급간식비 30,000원을 교재교구비로 잘못 처리한 것을 발견함. 수정방법 (발견일 : 6월 25일)

- 1) 6/25 교재교구비 -30,000원 반납결의서
적요 : 3/29 급간식비 계정과목 오류
- 2) 6/25 급간식비 30,000원 지출결의서
적요 : 3/29 급간식비 계정과목 정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제58조(과태료)

②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1. 26., 2016. 2. 3., 2018. 12. 11.>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내 역	수납 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2020	2021
입학준비금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가입은 도에서 일괄 대행 가 입) *시설별 별도 추가가입 가능 전자출결 태그비용(분실등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비 용은 수납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연	80,000	85,000
특별활동비	특별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소요경비	월	70,000	7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40,000	40,000
차량운행비	통학 차량 이용 시로 한정	월	30,000	30,000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행사), 액자제작	반기	60,000 (연 120,000원)	60,000 (연 120,000원)
	졸업반(만5세) 앨범 및 액자 제작비 (부모 동의 후 수납)	연	30,000	30,000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월	30,000 (1식 1,500원)	30,000 (1식 1,500원)
특성화 비용	개인용 교재교구 구입비	월	20,000	25,000

* 차량운행비 보조금(월 20만원), 기타 필요경비 - 차량운행비 정산 유의

* 필요경비(기타필요경비,특별활동비) 정산. 수입보다 지출이 큰 경우?

- 1) 필요경비를 카드 결제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입금되므로
ex. 특별활동비 3만원 카드 결제 -> 어린이집 입금 29,987원
특별활동비 지출 : 3만원
- 2)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
위탁보육료 수입(전입금)
기타필요경비나 특별활동비 지출 : 기타필요경비 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 3) 부모가 필요경비를 미납한 경우

* 부모한테 행사비를 받지 않고, 행사를 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 지출 X -> 행사비

최저임금

Q. 1일 8시간, 주 40시간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1일 \text{ 8시간} \times 5일) + \text{8시간(주휴일)}) \div 7(일주일) \times 365(일) \div 12(개월) = 208.5714.... \rightarrow 209시간$$

Q.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하는 조리원 선생님의 월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1일 \text{ 6시간} \times 5일) + \text{6시간(주휴일)}) \div 7(일주일) \times 365(일) \div 12(개월) = 156.4285.... \rightarrow 157시간$$

$$157시간 \times 8,720원 = 1,369,040원$$

* 토요일 : 근무시간 산정에 미포함. 무급휴무일. 연차휴가 차감 X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원)

소목자 소목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소득지급 (과세미달 일부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	A01					
	종 도 퇴 사	A02					
	일 용 근 로	A03					
	연 령 합 계	A04					
	연 령 분 별 납부금액	A05					
	가	A06					
	가	A10					

급여와 수당 구분 예시

(단위 : 원)					
구분	기본급	원감수당	급여계	공제액 (4대보험, 소득세)	실수령액
원감	2,000,000	100,000	2,100,000	230,000 (20만원, 3만원)	1,870,000

<실수령액 1,870,000원>

* 보육교직원수당 결의서 100,000원
보육교직원급여 결의서 1,770,000원

<4대보험료 및 소득세>

* 교사 : 보육교직원급여 결의서 230,000원

<총계정원장 계정과목별 금액 확인>

* 보육교직원급여 2,000,000원
보육교직원수당 100,000원

법정부담금

지출 결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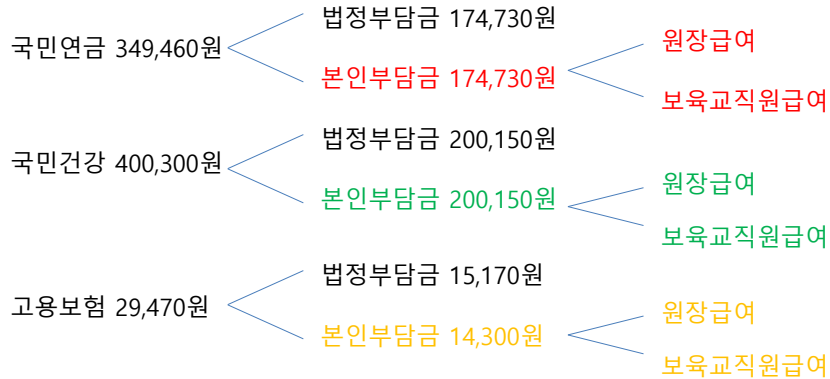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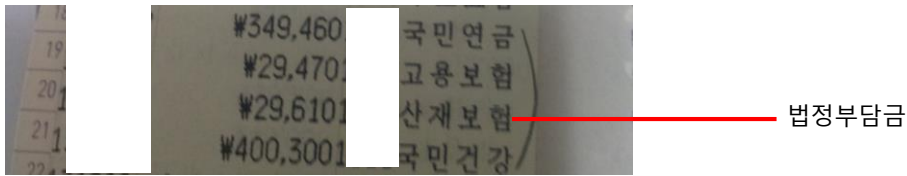
증빙서번호	20 년도 지출 아래와 같이 지출함.	결 재	담당	어린이집 원장
관	인건비	발 의		
항	기관부담금		현금출납부 등 재	
목	법정 부담금	총계정원장 등 재		
		물품대장등재 (공사대장, 봉급대장)		
금 사십이만사천사백구십원정 (₩ 419,660원)				
적 요	사회보험부담비용			
비 고	자동차세(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첨부서류 : 납부고지서, 출금내역확인증			

* 4대보험료가
운영비 통장에서
인출되는 경우

₩349,460	국민연금
₩29,470	고용보험
₩29,610	산재보험
₩400,300	국민건강

- 어린이집 부담금 : 419,660원
1) 법정부담금 지출결의서

- 근로자 부담금 : 389,180원
2) 원장급여 지출결의서 124,350원
3) 보육교직원급여 지출결의서
264,830원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EDI서비스

조회 출력 서식달기 도움말 전체메뉴 열기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 내역서 <개인별내역> -

고지년월차수 2014/10-1 작성일차수 2014/10/16-01 전자납부번호 5701305921312

성명	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상설일	회계	단위기관	직종	보수월액		
					00	000	00			
구분	산출보험료	정산사유	정산작성기간	정산보험료	감면사유	연말정산	고지금액	환급금이자	고지+이자	총계
건강	73,620			0		0	73,620	0	73,620	78,440
요양	4,820			0		0	4,820	0	4,820	

작성내역: 보수월액변경신청발행내역

> 이월해서 귀업자를 산출해서 산출내역에 포함됩니다. <<상영을 입력 후 엔터키를 치시면 대상자가 조회됩니다.>>

회계	단위기관	전체
00		

순번	증번호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건강산출보험료	건강정산보험료	건강연말정산	건강환급금이자	건강고지보험료	요양산출!
1				73,620	0	0	0	0	73,620	
2				59,750	0	0	0	0	59,750	
3				57,590	0	0	0	0	57,590	
4				43,120	0	0	0	0	43,120	
5				43,120	0	0	0	0	43,120	
6				64,090	0	0	0	0	64,090	
7				43,120	0	0	0	0	43,120	
8				105,100	0	0	0	0	105,100	
9				43,120	0	0	0	0	43,120	

구분	고지인원	연말정산	고지금액	환급금이자	고지+이자 합계	총계(건강+요양)
건강		0		0		
요양		0		0		

건강보험료(장기요양포함) 확인 edi.nhis.or.kr - 받은문서함 - 사업장고지내역서

보험결정내역		수납내역		가입자내역		소급분내역		국고지원내역	
연금보험료 대상자			보편로지원금 공제 전			보편로지원금 공제 후 (대상지연 표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보험료	근로자기여금	사용자부담금	근로자기여금	사용자부담금			
1		163,800 원	81,900 원	81,900 원					
2		303,200 원	151,600 원	151,600 원					
3		163,800 원	81,900 원	81,900 원					
4		163,880 원	81,940 원	81,940 원					
5		244,080 원	122,040 원	122,040 원					
6		239,660 원	119,830 원	119,830 원					
7		250,020 원	125,010 원	125,010 원					
8		339,020 원	169,510 원	169,510 원					
9		171,180 원	85,590 원	85,590 원					
10		163,800 원	81,900 원	81,900 원					
11		249,920 원	124,960 원	124,960 원					
12		171,180 원	85,590 원	85,590 원					
13		171,180 원	85,590 원	85,590 원					
14		394,020 원	197,010 원	197,010 원					
15		220,220 원	110,110 원	110,110 원					
16		163,800 원	81,900 원	81,900 원					
17		171,180 원	85,590 원	85,590 원					
18		171,180 원	85,590 원	85,590 원					
19		163,800 원	81,900 원	81,900 원					
20		173,600 원	86,800 원	86,800 원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당월분 연월(명)	28 명	연보험료 계(원)	5,744,420 원	사용자부담금 계(원)	2,872,210 원	분연기여금 계(원)	2,872,210 원
소급분 연월(명)	0 명	금액 계(원)	0 원	소급분내역 과징금액 계(원)	0 원	과징금소급액 계(원)	0 원

국민연금 보험료 확인 edi.nps.or.kr - 보험료 결정내역 - 통보서

<고용보험>

순번	보험년월	부과년월	근로자구분	근로자명	보험료		
					근로자실업급여	사업주실업급여	사업주고안직능
1	2021-02	2021-02	일반		31,410	31,410	9,810
2	2021-02	2021-02	일반		15,430	15,430	4,820
3	2021-02	2021-02	일반		28,530	28,530	8,910
4	2021-02	2021-02	일반		15,430	15,430	4,820
5	2021-02	2021-02	일반		15,430	15,430	4,820
합계					558,210	558,210	174,340

보육교직원
본인부담
-
급여

어린이집부담 - 법정부담금

고용, 산재보험료 확인 total.kcomwel.or.kr - 부과지 보험료 조회

구분		여비항목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정액) 다른 항목은 지급 불가 * 어린이집 차량 이용시 - 미지급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철도-실비(일반실) / 선박-실비(2등급) 항공-실비 / 자동차-대중교통요금 어린이집 차량 이용시 -미지급
		식비	1일 20,000원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미지급
		숙박비	실비(상한액: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숙박이 제공되는 경우 미지급
		일비	1일 20,000원 어린이집 차량 이용시 - 10,000원